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1. 9 선고 2021나4020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

변 론 종 결 2022. 10. 12.

판 결 선 고 2022. 11. 9.

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0. 1. 선고 2020가단17723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4,185,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7. 24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“처분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고”를 “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고”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창열, 판사 주철현, 판사 정경수